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09일

가좌3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해	이 *해 1981-01-06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37번길 (가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11-24
김 *연	김 *연 1996-05-06	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33번길 (가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11-24
신 *순	신 *순 1984-12-22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(가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11-24